

01

● 이상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상연구팀장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농업통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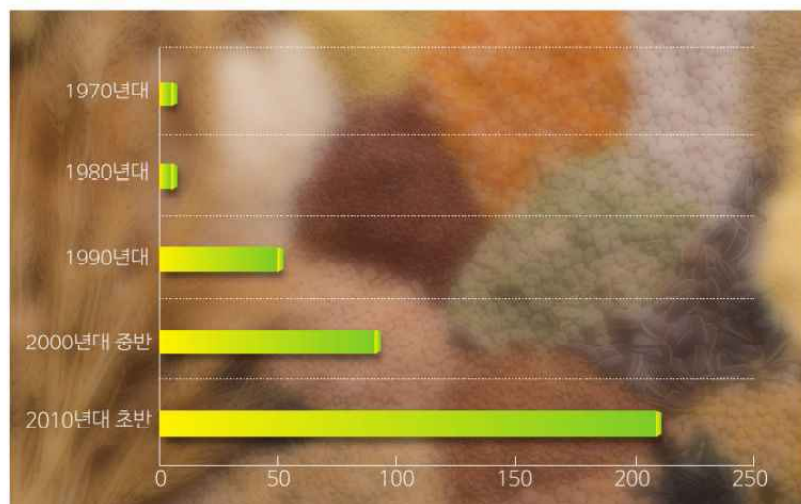
향후 5년 간 우리 농업은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관련 규범 및 제도에 대한 개선, 미래 사회 및
농업 전망에 기초한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 통합된 정보 시스템 구축,
검역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지난 50여 년간 국제무역질서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져 왔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국제 사회는 각국의 국경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철폐하여 요소 및 재화의 교환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48년 GATT 발효와 1995년 WTO 창설로 인하여 국제교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WTO와 APEC과 같은 다자협력체제 하에서의 무역 자유화 노력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인 FTA도 급속히 증가해오고 있다. WTO에서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 회원국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89년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창설이라는 목표로 APEC이 출범하여 지난 27년간 무역원활화를 비롯한 역내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450건이 넘는 FTA가 체결되었고 270여건에 달하는 FTA가 발효 중에 있다.

● 무역원활화 포함 FTA 건수



출처 : 이진면 외(2014), "글로벌 통상질서의 개편과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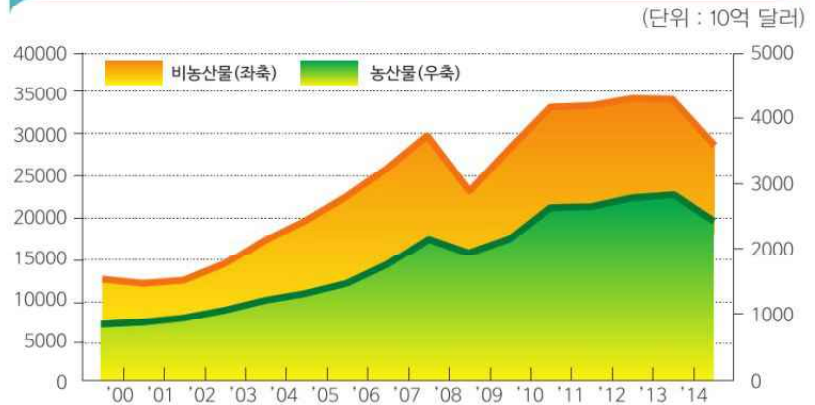
2010년대에 들어서는 양자간 FTA에서 더욱 발전하여 메가 FTA로 불리는 복수국간 FTA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메가 FTA가 활발히 논의되게 된 배경 중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DDA 협상 부진으로 판단된다. 국제 통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국제 기준의 설립이 늦어지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메가 FTA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었다. DDA 협상의 부진은 중국, 인도, 브라질의 경제성장에 따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 근본적으로는 각 국의 자국의 열위산업에 대해 보호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국이 열위산업에 대한 보호 성향이 높아진 것은, 국내경제, 정치적 환경에 기반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던 지난 50여년간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그에 비하여 국내 산업간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장이 통합되어가면서, 비교우위에 따라 각 국은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산업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우위에 있는 중국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은 쇠퇴하는 반면에 서비스, 금융 등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반면에, 노동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교우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는 반면에 비교열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았고, 이는 국내 양극화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자,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무역규모 증가 속도가 더디지자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금융 위기 이후 촉발된 중국 경제 둔화, 유로존의 정치·경제적 침체는 세계 무역을 침체시켰으며, 각국은 수입 제한 조치를 확대해나갔다.



● 2000년 이후 교역 동향



자료 : Global Trade Atlas

● WTO 회원국의 월별 평균 무역제한조치 건수, 2009-2015



자료: WIO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높은 실업률, 높은 규제 등으로 대표되는 '신노멀'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경제 침체와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적 불만도 계속 높아져 왔다. 이에 '신고립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영국(British)의 유럽연합 탈퇴(Exit)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우선(America First)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트럼프의 미대통령 당선은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Ⅱ. 미국 경제정책 및 세계 경제 전망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은 많은 기관과 언론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고찰해볼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초반 IT산업의 침체,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과 이라크 전쟁(2003년)으로 인하여 미국 경기가 악화되었고,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과열을 발생시켰고, 결국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2007~2009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미국 내에서는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방화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1977년 22%에서 최근 8%까지 크게 하락하였으며, 미국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1999년~2011년 사이 약 6,000만 개의 제조업 부문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제조업이 주요산업인 rust belt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지 기반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미국 제조업 보호에 기반을 둔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하여 국제 무역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취임 이후 그동안의 행보들을 살펴볼 때, 향후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거시 분야에서는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법인세를 대폭 인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로 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직후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을 공식선언하였듯이, 통상 분야에서는 메가 FTA를 지양하고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멕시코 등과의 통상마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가 대폭적으로 철폐되어, 친비즈니스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유지하고 있던 신자유무역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국제무역의 질서도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TPP 탈퇴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대신 서비스, 금융, IT 등 특정분야에 일부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국제적 기준 마련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 통상에 있어서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중국과 격렬한 마찰을 빚고 있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통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국내 산업보호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관련 압박 강화, 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호무역주의 등 신고립주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비관세조치도 강화·급증할 수 있다. 수입금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지역농산물 의무사용, 수출보조금 등이 비관세조치에 포함되며 앞으로 유사한 조치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그 여파가 아시아에까지 미칠 경우 소비감소로 인하여 동남아시아, 중국으로의 수출에 더욱 부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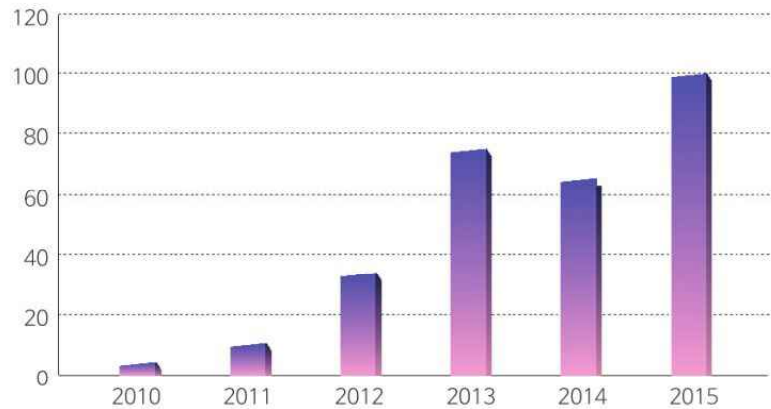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특정분야에 대한 복수국가간 협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논의되는 분야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TPP에서 합의되었던 규범분야들의 내용이 이러한 복수국가간 협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우리나라 농업통상에의 시사점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 반덤핑조치, WTO에의 제소, 수입 규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對美 수출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증가는 국내 경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경제침체에 따른 국산 농식품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의 對韓 통상 압박 및 WTO 제소 증가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방어가 되지 않을 경우 수입 농식품의 증가도 우려된다. 수출 역시 보호 무역의 강화로 비관세조치가 급증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는 최근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SPS, TBT, TRQ 등 규범분야에 있어 엄격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TPP 협정상의 규범은 향후 국제질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을 예상하여, 국내 관련 규범 및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SPS 사항들에 대한 수출국들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검역관련 조직 확대,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검역관련 과학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역량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각 국에 있어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 TBT, SPS, 지재권 등의 집행 강화가 예상되므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간 협의채널을 통한 사전해결 노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한국산 농식품 통관거부건수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이상현 외(2016). "미 대선 이후 한미 농업통상 전망 및 대응방안" 재인용

신고립주의의 확산에 따라 각 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립주의는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농식품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품질화 전략을 취했던 농가의 혼란과 생산 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농업분야에서는, TPP와 같은 메가 FTA의 속도가 늦춰지면서 전면적인 시장개방의 위험도 감소했다는 좋은 점도 있다. 따라서 향후 5년 간 우리 농업은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TPP 협정상의 규범은 향후, 국제질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을 예상하여, 국내 관련 규범 및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 및 농업 전망에 기초한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법과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 통합된 정보 시스템 구축, 검역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對한국 수산물 수입통관 거부 현황 고찰

수산업의 해외진출 경험은 타산업에 비해 초기단계로 수출관련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중국시장의 수입통관 장벽에 애로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통관거부 내용파악 등 사전 정보획득이 필요하며, 아울러 중국측 통관에 부합하는 성분기준, 서류, 라벨링/포장 등에 대한 현지 상품 수입정보를 필히 숙지하고 수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 수산업에 있어서의 한·중 FTA 의미

우리나라 수산관련 전후방산업 부가가치액 약 29조원 추산, 2015년 기준 수산물 생산량 334만톤 · 세계 13위, 양식어업 세계 8위, 원양어업 세계 3위, 수산물 수출입무역량 65억 달러, 위의 객관적 수치는 글로벌 수산업 환경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 어업생산액이 전체 GDP의 0.4%인 7조 1,808억원 (2015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의 세계적 위상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특히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의 발효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서 타 FTA 체결국과 비교 상대적으로 우려의

● 한·중 FTA 우리나라 수산물 양허 현황

구 분	양허 단계	품목수	품목수 비중(%)	대중수입액 (백만달러)	수입액 비중(%)	주요품목
합 계		629	100.0	1,076	100.0	
초민감 품목	소개	87	13.8	690	64.3	
	양허제외 ¹⁾	64	10.1	327	30.4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등
	TRQ ²⁾	14	2.2	313	29.2	낙지(냉동), 아귀(냉동), 바지락(냉동) 등
	부분감축 ³⁾	9	1.4	50	4.7	꽃게(냉동), 복어(냉동) 등
민감품목 ⁴⁾		429	68.3	384	35.5	새우류, 새우살(냉동) 등
일반품목 ⁵⁾		113	17.9	2	0.2	연어, 패각

주1) 불법조업 대상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주2) 이미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민감품목으로 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주3) 양허제외, TRQ에 속하지 못한 품목(관세율 20% 위주)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목

주4) FTA 발효일로부터 15년~20년의 장기철폐 설정하기로 합의한 품목

주5) 10년내, 5년내, 즉시철폐 등으로 관세철폐하기로 합의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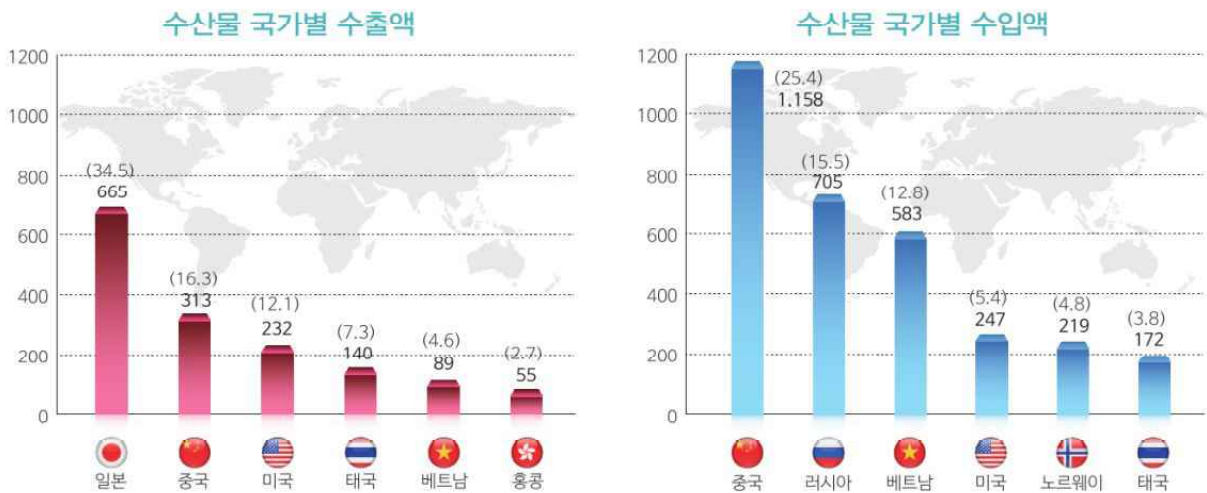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11.10) 재정리

목소리가 컸다. 수산분야 한중 FTA 협상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수산물 양허대상 629개 품목 중 초민감품목군 87개(13.8%), 민감품목군 429개(68.3%), 일반품목군 113개(17.9%)로 전체 수산물 양허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86.2%로 개방수준이 높다.

즉,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¹³⁾이자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입과 수출에 각각 1, 2위의 비중¹⁴⁾을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역 국가로서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서 한중 FTA의 발효의 의미는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수산물 유입이라는 위기¹⁵⁾인 동시에 수출을 통한 가치창출이라는 기회요인이 함께 공존하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 2015년 우리나라 수산물 국가별 교역액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13)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2010~2014년 평균 5,904만톤으로 동기간 우리나라 생산량 320만톤의 18배(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및 중국어업통계연감 각년도 산정)

14) 대 중국 수산물 수입 비중 25.4%(1위, 2015년), 수출 비중 16.3%(2위, 2015년)

15)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2년~2015년 3년평균 7억 8,900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한중 FTA 발효로 이후 대중국 수산물 수입 및 무역적자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3년 평균 (백만달러)	비 중 (B/A)
수 출	수산물 전체(A)	2,152	2,067	1,925	2,048	16.1
	對 중국(B)	370	309	313	331	
수 입	수산물 전체(A)	3,895	4,506	4,556	4,319	25.9
	對 중국(B)	1,026	1,175	1,158	1,120	
무역수지	수산물 전체(A)	-1,743	-2,439	-2,631	-2,207	35.7
	對 중국(B)	-656	-866	-845	-78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이제는 한중 FTA 발효의 기회측면에 집중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중국시장 수출 공략을 본격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수출확대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될 시점이다. '중국 10년 내 수산물 수입 자유화율 100%, 대중국 수출대상 주요 품목인 김, 미역, 넙치, 전복 등 62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 철폐, 중국 13억의 수산식품 잠재소비자, 중국 내 수산식품산업 경쟁구도 미고착, 수산식품 블루오션 시장'. 이것이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들이다.

본고에서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확대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국 수입통관 측면에서 그 실제 현황과 시사점을 조망해 본다.



Ⅱ. 중국의 수산물 수입통관 거부 현황¹⁶⁾

중국의 對세계 수산식품 수입통관 거부 실태

최근 중국의 對세계 수산식품¹⁷⁾ 통관거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3건, 2013년 150건, 2014년 175건, 그리고 2015년 88건으로 총 466건이다. 이 중 수산식품 중 가공품의 비중은 52.6%로 수산물 47.4%의 비중보다 높다. 향후 수산 가공품의 對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을 예상 할 때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對 세계 수산식품 통관거부 건수

(단위 : 건)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전체 (A+C)	851	1,844	3,047	1,178	6,920
가공식품(A)	839	1,753	2,990	1,117	6,699
– 수산가공품(B)	41	59	118	27	245
수산물(C)	12	91	57	61	221
수산식품(B+C)	53	150	175	88	4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를 근거로 재분석

이를 국가별로 보면 말레이시아가 4년간 수산식품 통관거부 건수가 총 83건으로 전체 건수 466건 중 17.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이며, 78건으로 16.7% 비중이다. 그 외 대만 73건(15.7%), 태국 38건(8.2%), 노르웨이 30건(6.4%), 미국 22건(4.7%), 기타 142건(30.5%) 순¹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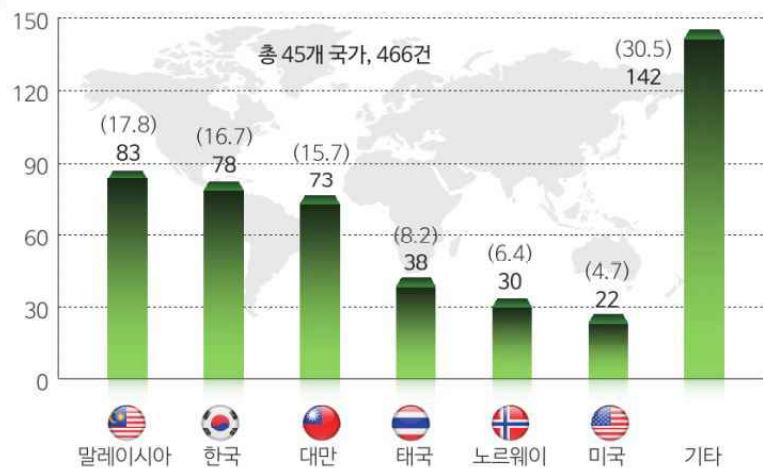
16) 본 자료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김우경·박지훈, 2016.11) 「중국의 식품안전 강화에 따른 수산물 수입통관 대응방향」의 일부 내용임.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부터 2015년(일부) 기간 동안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국별 통관 거부사례'에서 추출, 이 중 별도 분류된 수산가공식품 245건 및 수산물 221건을 포함한 총 466건을 토대로 분석함. 구체적으로 중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품목 통관거부 건수 466건 중, 對한국 수산품 통관거부 건수는 총 78건임

17) 수산식품은 수산가공품과 수산물(냉동 등 원물)을 모두 포함함

18) 기타 국가로는 베트남, 영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키리바시, 미얀마, 칠레, 모잠비크, 아일랜드 등

중국의 수산물 수입액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2014년 기준 2% 수준을 감안한다면, 수산물 수입 통관거부 건수 비중은 1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향후 對 중국 수산물 수출에 있어 통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중국의 수산물 수입통관 거부현황, 2012~2015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다음으로 수입통관이 거부된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총 48개 품목 중, 가공김이 건수로 8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18.9%)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오징어 50건(10.7%), 갈치 36건(7.7%), 연어 27건(5.8%), 새우 25건(5.4%), 대구 19건(4.1%), 기타 26건(47.4%) 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산가공품 수출 주요품목은 김¹⁹⁾으로 통관거부의 유형(성분, 서류미비, 라벨링·포장, 식품변질, 표준 미준수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모니터링과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에서 다룰 중국의 對한국 수산물 수입통관 거부 현황에서 살펴보자.

19) 2016년 기준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 377백만달러 중 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8백만달러)

● 중국 주요 수입수산물통관 거부 현황, 2012~2015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의 對한국 수산물 수입통관 거부 현황

앞의 중국의 對세계 수산식품 수입통관 거부현황에 이어 우리나라의 사례를 분류별, 품목별, 유형별, 세관별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김품목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산식품과 관련한 수입통관 거부 건수를 살펴보면 모두 78건에 이른다. 이 중 수산가공품이 59건으로 전체 78건 중 75.6%의 비중을 보이는 반면 수산물은 19건으로 24.4%를 차지한다. 중국의 對세계 수입통관 거부 현황(수산가공품 52.6%, 수산물 47.4%)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입통관 거부 비중이 수산물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 對한국 분류별 수입통관 거부현황, 2012~2015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이어, 품목별로 보면 對세계 수입통관 거부사례에서와 같이 김품목이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43건으로 수입통관 거부 총 건수 78건 중 55.1% 비중으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어리 9건(11.5%), 오징어 4건(5.1%), 고등어 4건(5.1%), 소금 3건(3.8%), 새우 3건(3.8%), 기타²⁰⁾ 12건(15.4%) 순이다.

20) 기타 품목으로는 문어, 참치, 소라, 삼치, 병어, 대구, 꽃게, 가자미 등

● 對한국 품목별 수입통관 거부현황, 2012~2015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입통관 거부 유형별로는 지난 4년 동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관련 내용이 총 48건으로 전체 78건 중 61.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류미비 유형이 12건(15.4%), 라벨링/포장관련 6건(7.7%) 순이다.

● 對한국 유형별 수입통관 거부현황, 2012~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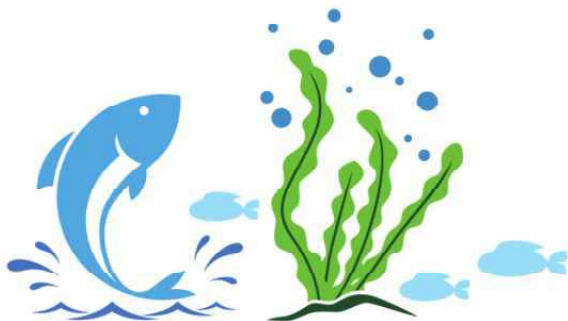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세관별로는 중국 산둥성 지역이 35건(비중 44.9%)으로 수입통관 거부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천 2건(15.4%), 광둥성 9건(11.5%), 절강성 4건(5.1%), 샤먼 4건(5.1%), 베이징 4건(5.1%) 순이다. 그 외에도 상하이, 복건성, 랴오닝성, 닝보, 강소성 등에서도 수입통관 거부 사례가 나타났다. 수입통관 거부의 대부분은 주로 연안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산둥성 지역이 가장 많았다.

● 對한국 세관별 수입통관 거부현황, 2012~2015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의 對한국 김품목 수입통관 거부 현황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산가공 수출 효자품목은 단연 김으로 최근 중국 소비자의 김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따라 김스낵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2016년 기준 對중국 수산식품(가공 및 수산물) 수출액 377백만달러 중 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8백만달러)이다.

가공김 품목의 수입통관 거부유형을 보면 성분(금지, 기준치)초과 36건, 서류미비 3건, 라벨링/포장 3건으로 각각 구분된다. 중국의 세계로부터 수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외 다른 유형으로 통관 거부된 경우는 없었다.

● 對한국 수입통관 가공김의 유형별 통관거부 현황, 2012~2015년

	성분 (금지, 기준치) 초과	서류미비	라벨링/ 포장	계
건 수	36	3	3	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거부유형 중 가장 많은 성분(금지, 기준치)초과 기준에서는 규락총수 기준치 초과가 26건(7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장균 기준치 초과 6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관거부 내용으로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 3건, 규정위반 물질인 디메틸 실리콘 폴리미 시용 1건 등이 파악되었다. 다행히 對세계 통관거부 내용에 비교해서는 카드뮴, 수분, 납 기준치 초과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對한국 수입 가공김 성분초과 세부내용, 2012~2015년

(건수 : 총 36건)

통관 거부 사유	기 준	건수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최대허용치 30,000cfu/g	26
대장균 기준치 초과	최대허용치 30MPN/100g	6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	최대허용치 1.5mg/kg	3
규정위반 물질 사용	디메틸 실리콘 폴리머 금지	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거부유형 중 서류미비의 경우는 3건으로 모두 상품증서 불합격(100%)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으로 수출시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첨가제 사용증명서 등을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하여 합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對한국 수입 가공김 서류미비 기준 통관거부 세부내용, 2012~2015년

(건수 : 총 3건)

통관 거부 사유	기 준	건수
상품증서 불합격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아울러 라벨링/포장 기준으로 통관거부 건수는 총 3건으로, 라벨링/포장 기준은 표기대로 제작하더라도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조건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수출 제반비용과 노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 對한국 수입 가공김 라벨링/포장 기준 통관거부 세부내용, 2012~2015년

(단위 : 총 3건)

통관 거부 사유	기 준
라벨불합격	- GB7718-2011에 의거 -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 함 - 식품라벨은 최소 판매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 - 한 개 판매단위 포장에 부동한 품종, 다양한 독립포장 식품이 포함된 경우 매개 독립포장의 식품라벨은 본 규정에 따라 표기 - 식품라벨은 분명하고 선명해야 함 - 식품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 단 상표는 제외, 식품라벨은 중문과 외국문자 동시 사용 가능하며,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크기는 ≤ 중문, 단 등록상표는 제외 - 식품 혹은 포장 최대표면 면적 > 20cm²인 경우 식품라벨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는 1.8mm보다 커야 하며, 최대 표면면적 < 10cm²인 경우 식품라벨에 식품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표기내용은 규정에 따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원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Ⅲ. 글을 마치며

최근 중국의 「식품안전법²¹⁾」이 개정되는 등 중국으로 유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수산식품 수출입과 관련, 2015년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입 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해외 수출업체 식품안전 표준 준수 강화' 그리고 '해외 수출업체 심사 강화' 등 네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이처럼 중국이 수입품목에 대한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업은 한중 FTA의 기회창출의 채널로서 對중국 수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자 정부 및 수산업의 대표단체인 수협 등이 중국의 수산식품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협은 정부지원을 통해 중국 상해(2014), 청도(2015), 북경(2016) 현지에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현지 무역사무소를 개소하였고, 아울러 작년 4월에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 수협의 독자 영리법인인 '위해수협국제 무역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 성장동력의 하드웨어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해외진출 경험은 타산업에 비해 초기단계에 있으며 그로인한 학습 효과가 아직 미비하다는 데에 있다. 특히 수산식품 관련 영세업체의 경우 수출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중국시장의 수입통관 장벽에 애로가 적지 않다.

앞시 중국의 식품안전 강화에 따른 수입통관 거부실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향후 수산식품 수출에 있어 중국의 수입통관장벽이 수출의 걸림 돌이 되지 않도록 꾸준한 학습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산식품 수출 주체인 수출업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통관거부 내용파악 등 사전 정보획득이 필요하며, 아울러 중국측 통관에 부합하는 성분기준, 서류, 라벨링/포장 등에 대한 현지 상품 수입정보를 필히 숙지하고 수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총 10장 154조항으로 구성됨. 이 중, 수출입 관련 전체 법조항은 제6장 「식품수출입」 편으로 제91조 「수출입식품 감독관리 기관」 내용부터 101조 「상대국가, 안전체계 등 관리」까지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